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03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3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당초 금액 대비 80% 초과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시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한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473백만원에서 381백만원증가한 85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구 분	'23년(A) 당초예산	'22년(B) 결산반영	증 감 (B-A)
계	1,473,476	1,854,724	381,248
예치금회수	376,778	758,026	381,248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이자수입	964,858	964,858	-
기타수입	31,840	31,840	-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사업)	'23년(C) 당초 예산	'23년(D) 변경(안)	증 감(D-C) (증감률)
계	1,473,476	1,854,724	381,248
비용자성 사업비	980,000	980,000	-
기본경비	20,000	20,000	-
예치금	473,476	854,724	381,248 (80.5%)

다.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지출합계	473,476	854,724	381,248	80.5
일반예산 (재무활동)	473,476	854,724	381,248	80.5
보전지출 (성평등기금)	473,476	854,724	381,248	80.5
여유자금 예치 (성평등기금)	473,476	854,724	381,248	80.5
예치금	473,476	854,724	381,248	80.5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3억 8,100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3억 8,100만원)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80.5%, 3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6

〈표 3-1〉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473	854	381	80.5
재 무 활 동	473	854	381	80.5
보 전 지 출 (성 평 등 기 금)	473	854	381	80.5
여 유 자 금 예 치	473	854	381	80.5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②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성평등기금의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